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87
------	------

2017. 8. 3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1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7. 8. 30)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장혁재)

- 실국 소관업무 조정 및 현장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소 신설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실국별 소관업무 조정과 현장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소 신설 등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세부적으로는 중요 기록물 수집·보존 등을 목적으로 서울기록원(4급)을 신설하고,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를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분리해 독립사업소(5급)로 재편하려는 것임.
- 또한, 먹거리 정책기능 강화와 부서 직제순서 변경 등을 위해 시민건강국과 기후환경본부 일부 업무를 조정하는 등 본청기구의¹⁾ 변동없이 소속기관 조직체계를 현행 '32직속기관 48사업소'에서 '32직속기관 50사업소'로 변경하고자 함.

1) 1실 9본부 9국 13관·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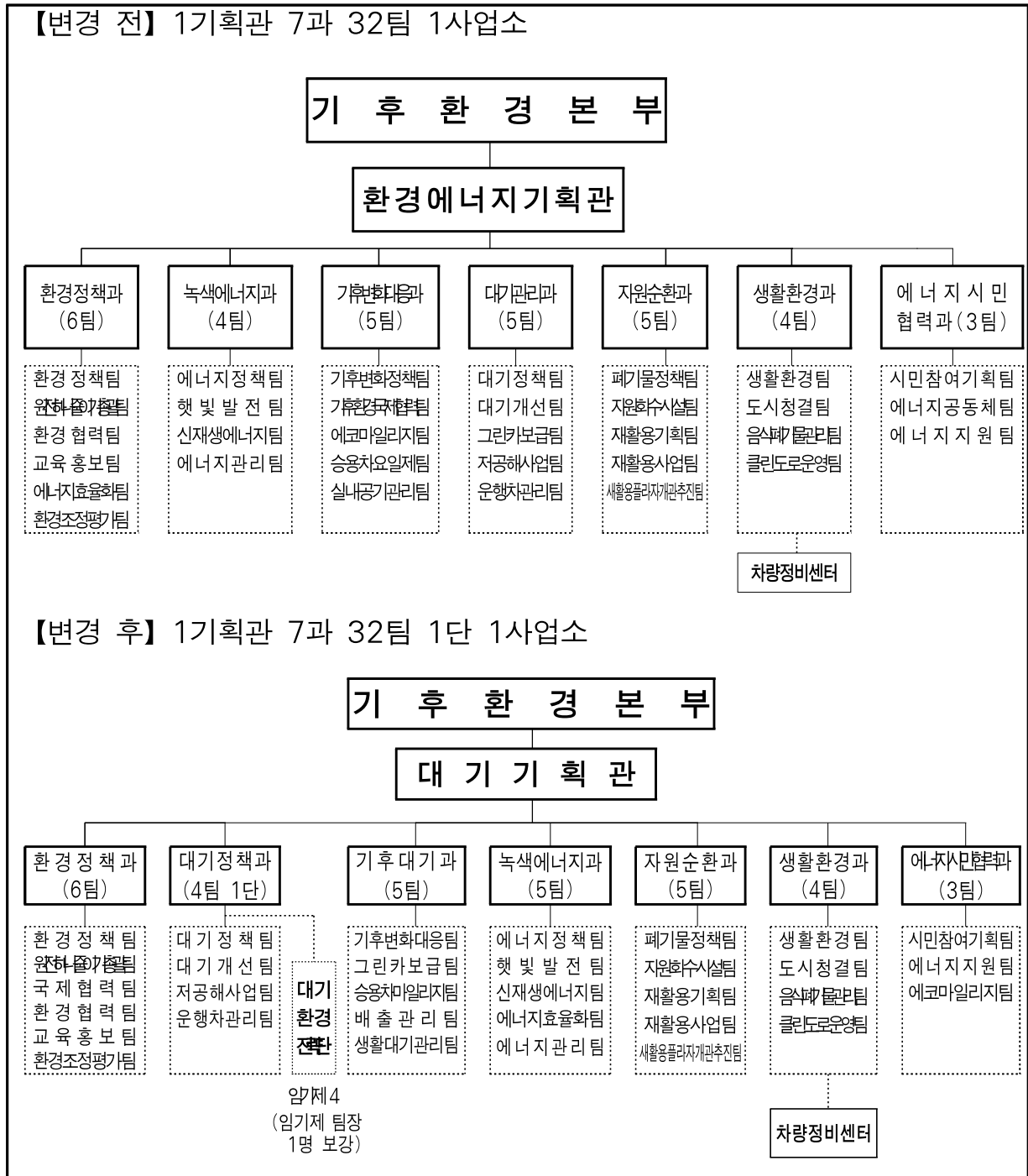
나. 주요개편 내용에 대한 검토

1) 업무 책임성 강화를 위한 소관업무 조정(안 제10조 및 제14조)

- 안 제10조는 기후환경본부의 분장사항 직제순을 변경하고 일부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 시는 그 동안 미세먼지 예·경보 발령제와 수도권 비상저감장치 시행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환경의 변화와 대내·외 요인에 따른 대기질의 매년 악화됨에 따라 해당 업무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행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최근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미세먼지가 상시 발생하는 등 시의 독립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대기환경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시민의 불편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이에 안 제10조 이하에서 기후환경본부 소관의 분장사무의 순서를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시민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변경해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
- 시의 계획에 따르면 조례 개정에 따라 향후 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는 환경에너지기획관을 대기기획관으로 변경하고, 대기 업무 관련 부서를 1개(대기관리과)에서 2개(대기정책과,

기후대기과)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며, 과 단위의 직제순서도 변경할 계획임.

〈기후환경본부 조직개편(안)〉²⁾



2) 과 단위의 개편은 기구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임.

- 안 제14조는 시민건강국의 업무범위에 먹거리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시는 고령화와 생활환경의 변화 및 시민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민관협력을 통한 먹거리 안심체계 구축 필요성, 원산지 관리와 가공식품 안전관리 필요성 등에 따른 대응성 강화를 위해 해당 조식을 정비하고자 함.
- 이와 같은 조직 정비 계획은 지난 6월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실현을 정책목표로 수립한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구체적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임.
- 조례 개정이후 시는 규칙을 통해 현재의 식품안전과를 식품정책과로 전환하고, 식품안전과내 먹거리전략팀 신설 등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임.

2) 서울기록원 신설(안 제119조부터 제121조 신설)

- 안 제119조부터 제121조는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해 서울기록원을 신설하고자 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과 도지사에게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였음³⁾).

- 이에 따라 시는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의무화와 공공재인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관리로 시민의 기록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서울기록원 설립을 진행하고 있음.
- 2012년 세계 최고의 아카이브건립을 결정한 이후 현재 시는 은평구 통일로 혁신파크내에 연면적 15,004㎡ 규모의 서울기록원을 201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중에 있음.

〈서울기록원 건축개요〉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 (혁신파크내)
- 규 모 : 연면적 15,004㎡ (지상5층, 지하2층)
 - 전문서고, 전시실, 열람실, 아카이브자료실, 세미나실 등
- 공사기간 : '16.4월 ~ '18.10월(30개월)
- 총투자비 : 498억원 (시설비 425, 감리부대비 31, 장비비42)

3)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이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시·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 시는 서울기록원 건립은 물론이고, 개관 이전에 기록연구 등에 필요한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사전에 내실있는 준비로 공공 기록물의 관리와 보관외에 소장기록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보장을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서울기록원 건립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소를 서둘러 신설하고 관련 조직을 구성 하려는 계획임.
- 시는 서울기록원을 사업소 설치가 완료되는 내년 1월 이후에 기록수집보존, 기록정보서비스, 운영지원 등으로 업무를 분류해 3개과 26명 조직으로 구성할 계획임⁴⁾.
- 신규 조직 설치의 용이성과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4급의 독립사업소 형태로 서울기록원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기록관리업무에 대한 실행력이나 자치구를 포함한 관련기관에 대한 파급력 등을 고려해 본청 조직으로 구성하는 방안과의 차별성을 면밀히 비교할 필요가 있음.

3) 문화비축기지사업소 신설(안 제122조부터 제124조)

- 안 제24절(제122조에서 제124조)은 문화행사·전시프로그램 생산을 주된 설치목적으로 하는 문화공원의 관리·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서부공원녹지사업소(4급)내에 설치·운영중인 문화

4) 2013년 실시한 서울기록원 건립추진 학술용역에서는 국가기록원과 해외 아카이브 사례를 참고해 120명 규모의 조직을 제시했음. 현재 국가기록원 315명, 대통령기록관은 60명 정도의 조직으로 운영중임.

비축기지관리사무소를 별도의 사업소(5급)로 신설하고자 함.

〈서울문화비축기지 개요〉

□ 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증산로 87 일대
- 면 적 : 140,022㎡
 - 문화공원 : 101,510㎡ (녹지 등 93,390㎡, 건축물 9개동 8,120㎡)
 - 임시주차장 : 38,512㎡
- 공사기간 : '13. 1. ~ '17. 5.
- 사업내용 : 친환경·재생의 복합 생태·문화 공간 조성
 - 석유탱크 5기를 생태·환경·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 및 재생
 - 탱크 등 시설 및 외부 공간 활용을 위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제시
 - 건축 및 외부 공간계획 (보행·차량 동선, 식재·포장 등 공원조성계획)
- 사 업 비 : 47,004백만원

□ 시설 현황

- 수목식재 : 교목 7종 228주, 관목 18종 17,753주 등
- 건 축 물 : 공연장(1·2탱크, 1,908㎡), 전시장(4·5탱크, 2,118㎡) 등 9개동

구 분	연면적	층 수	주 용도
계	8,120		
1번 탱크	554	1층	파빌리온(다목적 공연장)
2번 탱크	1,354	1층	공연장, 매점
4번 탱크	1,228	1층	전시장, 기계·전기실
5번 탱크	890	2층	전시장
6번 탱크	2,948	지하3층/2층	정보교류공간, 대회의실, 다목적강의실 등
기타 지원시설	1,147	-	안내실, 장비보관실, 기계·전기실, 펌프실 등

※ 3번 탱크(1,046㎡) : 석유비축 탱크 원형보존 예정

- 문화비축기지는 과거 석유비축기지로 활용되던 마포구 증산로 일대를 친환경·재생의 복합 생태·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현재 공원조성이 완료되어 9월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 시는 일반적인 공원의 범위에서 벗어나 다양한 창조주체(사회적 경제, 문화예술생태계, 생활창작, 제작문화단체 등)가 함께 참여해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시민주도형 공원 운영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에 따라 기존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내부의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를 독립된 사업소로 신설하고자 함.
- 과거 석유비축기지로 활용되던 공간을 완전히 재구성해 각종 공연장과 전시장은 물론이고 정보교류와 강의실 등을 갖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한 해당 공원의 활용목적이 과거의 전통적인 공원관리와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각종 문화·전시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등이 요구됨에 따라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분리해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됨.
- 하지만, 향후 행정환경이나 시민의 서비스 요구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것과 차별되는 새로운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소의 신설이 조직운영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요구됨.
-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설치된 문화비축기지가 별도의 사업소로 독립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원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푸른도시국 산하의 사업소로 존재하면서 공원관리 체계상 혼란을 줄 우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이미 시에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외에 48개의 각종 사업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소가 각기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본 사례가 다른 사업소들에 소속된 기관들의 독립화를 자극하는 사례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적정한 업무량 충족여부, 다른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가 문화비축기지를 포함한 도시공원 전체의 관리사무를 공원녹지사업소에 위임하고 있는 사정 등을 살펴 다른 법규와의 충돌 문제도 해소되어야 할 것임.

4) 도로명 주소 부여(안 제116조 및 별표 1)

- 안 제116조와 별표 1은 신설되는 서울식물원과 성동소방서의 도로명 주소가 새롭게 부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임.

5) 기타 규칙상 조직개편 사항(규칙 개정 예정사항)

- 시는 대시민 접점 서비스 강화와 시정 핵심사업 성과 창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조례 개정 이후 규칙 개정을 통해서 4급 상당의 일부 부서를 신설 또는 재편할 계획임.
- 우선,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공단

추진반을 복지정책과내에 신설하고, 공예박물관조성추진반을 박물관과내에 신설할 예정임.

- 또한, 2019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서울개최 결정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현재 체육정책과내 전국체전팀을 전국체전기획과로 확대개편하고, 미래산업 육성과 재정운영 시민참여 강화를 위해 각각 운영중인 산업거점조성반(경제진흥본부)과 시민참여예산반(기획조정실)을 신성장산업과와 시민참여예산과로 개편해 운영할 계획임.
- 시정계획 달성을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잦은 조직개편이 조직운용의 안정성과 합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987
----------	---------

제안년월일 : 2017년 8월 30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문화비축기지사업소 신설은 업무 충돌이나 다른 사업소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아 관련 부분을 삭제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문화비축기지사업소 신설 사항 삭제(안 제24절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4절(안 제122조부터 제124조까지)을 삭제하고, 안 제125조부터 제130조를 제122조부터 제127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10조(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에너지행정,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합리화, 에너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u> 3. <u>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실내 공기질, 석면 관리 등에 관한 사항</u> 4. <u>대기질 개선, 비산먼지 관리, 친환경자동차 보급, 경유차 저공해화,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사</u> 	<p>제10조(기후환경본부)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대기질 개선, 비산먼지 관리, 경유차 저공해화,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에 관한 사항</u> 3. <u>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자동차 보급, 온실가스 감축,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생활대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u> 4. <u>에너지행정,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합리화, 에너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u> 	<p>〈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u>항</u> 5.~7. (생략)</p> <p>제14조(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2. (생략)</p> <p><u>3. 식품안전의 관리에 관한 사항</u></p> <p><u>항</u> 4. ~ 5. (생략)</p> <p>제116조(설치) ① (생략)</p> <p>② <u>식물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812에 둔다.</u></p> <p><u>〈신설〉</u></p>	<p>5.~7. (생략)</p> <p>제14조(시민건강국) ----- -----.</p> <p>1. ~ 2. (현행과 같음)</p> <p><u>3. 식품안전 및 먹거리 정책에 관한 사항</u></p> <p>4. ~ 5. (현행과 같음)</p> <p>제116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식물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마곡동)에 둔다.</u></p> <p>제23절 서울기록원</p> <p><u>제119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u></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기록원(이하 이 절에서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기록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에 둔다.</p> <p>제120조(원장) 기록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121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록물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신 설〉</p>	<p>3.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p> <p>제24절 문화비축기지사업소</p> <p>제122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문화비축기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문화비축기지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문화비축기지”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문화비축기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증산로 87(성산동)에 둔다.</p> <p>제123조(소장) 문화비축기지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119조~제124조 (생 략)</p> <p>【별표1】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p>	<p>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12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2.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3. 공연·전시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p> <p>제125조~제130조 (현행 제119조부터 제124조까지와 같음)</p> <p>【별표1】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p>	<p>제122조~제127조 (현행 제119조부터 제124조까지와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성동소방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u>행당동 92-6번지</u>	성동구 일원	성동소방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u>살곶이길 331(행당동)</u>	성동구 일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기질 개선, 비산먼지 관리, 경유차 저공해화,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자동차 보급, 온실가스 감축,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생활대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에너지행정,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합리화, 에너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식품안전 및 먹거리 정책에 관한 사항

제1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식물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마곡동)에 둔다.

제119조부터 제124조까지를 각각 제122조부터 제127조까지로 하고, 제2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절 서울기록원

제119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기록원(이하 이 절에서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록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에 둔다.

제120조(원장) 기록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1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록물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별표1 성동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성동소방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행당동)	성동구 일원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은 201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기획관

②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창조경제기획관”을 “경제기획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창조경제기획관”을 “경제기획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기획관

④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평생교육정책관”을 “평생교육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대기관리과장”을 “대기정책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생 략)</p> <p>2. <u>에너지행정,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합리화, 에너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u></p> <p>3. <u>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실내 공기질, 석면 관리 등에 관한 사항</u></p> <p>4. <u>대기질 개선, 비산먼지 관리, 친환경자동차 보급, 경유차 저공해화,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사항</u></p> <p>5.~7. (생 략)</p>	<p>제10조(기후환경본부) ----- -----.</p> <p>1. (생 략)</p> <p>2. <u>대기질 개선, 비산먼지 관리, 경유차 저공해화,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에 관한 사항</u></p> <p>3. <u>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자동차 보급, 온실가스 감축,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생활대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u></p> <p>4. <u>에너지행정,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합리화, 에너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u></p> <p>5.~7. (생 략)</p>
<p>제14조(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2. (생 략)</p> <p>3. <u>식품안전의 관리에 관한 사항</u></p> <p>4. ~ 5. (생 략)</p>	<p>제14조(시민건강국)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식품안전 및 먹거리 정책에 관한 사항</u></p> <p>4. ~ 5. (현행과 같음)</p>
<p>제116조(설치) ① (생 략)</p>	<p>제116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 식물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812에 둔다.</p> <p>〈신 설〉</p> <p><u>제119조~제124조</u> (생 략)</p>	<p>② 식물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마곡동)에 둔다.</p> <p>제23절 서울기록원</p> <p><u>제119조(설치)</u>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기록원(이하 이 절에서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기록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에 둔다.</p> <p><u>제120조(원장)</u> 기록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u>제121조(소관사무)</u>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록물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p><u>제122조~제127조</u> (현행 제 119조부터 제124조까지와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별표1】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역
성동소방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92-6번지	성동구 일원	성동소방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행당동)	성동구 일원